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신설〉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45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12. 12.
3. 회부연월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휴업신고 및 휴업한 사업의 재개신고 의무를 그 휴업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하려는 것임(안 16조제1항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대행자는 업무를 <u>휴업·폐업</u> 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 <u>휴업 또는 폐업</u> ----- ----- ----- ----- ----- ----- <u>. 다만, 휴업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¹⁾를 도입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²⁾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있음.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⁴⁾하여야 하고, 대행업무를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⁵⁾하여야 함.

그런데 휴업신고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단기 휴업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
-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있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6개 법률에 대하여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24년 12월 10일에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휴업 및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의무 완화 대상 법률]

연번	정비 대상 법률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1	법무사법	법무사업	·30일 이상 휴업 시 휴업신고	법무부
2	변호사법	변호사업		
3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업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시계측관리업		행정안전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		
8	인삼산업법	인삼류제조업		농림축산식품부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청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환경부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해양수산부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14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업		
15	항로표지법	위탁관리업		
16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15일 이상 휴업시 휴업신고	해양경찰청

개정안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349